서울시설공단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

제정 2018. 12. 14.
개정 2019. 7. 9.
2019. 11. 21.
2019. 12.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월 정기 주차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정기 주차: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신청한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 하여 주차하는 행위
2. 월정기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신청한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용권
3. 야간 월정기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한 주차장을 야간시간(19시~익일09시)에만 입·출차 하고 주차할 수 있는 월정기권
4. 전일 월정기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한 주차장을 24시간 종일 자유롭게 입·출차 하고 주차할 수 있는 월정기권
5. 신청 개시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익월 월정기권을 신청 및 결제할 수 있는 시작일자
6. 선착순 방식: 각 주차장별 신청 개시일 09시부터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월정기권 결제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7. 추첨 방식: 추첨방식을 적용하는 주차장에 한해 18일 09시부터 22일 23시까지 월정기권을 접수하면, 공고매수 만큼 전산을 통해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월정기권 결제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8. 시간주차요금: 각 주차장별로 급지에 따라 정해진 5분당 주차요금에 따라 계산된 이용요금
9. 감면대상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
10. 신청자: 월정기권 이용을 희망하여 해당 주차장 월정기권을 신청하고 선착순 안에 들어 결제기회가 부여된 자
11. 취소자: 월정기권 이용 개시일 전에 이용 의사가 없어져서 월정기권 신청 또는 결제를 철회한 자
12.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여 월정기권을 신청·결제 후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13. 대기 순번자: 월정기권 사용을 희망하여 정기권을 접수하였으나 선착순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려 결제하지 못하고 대기번호를 부여받은 자
14. 신청일: 월정기권의 이용을 희망자가 인터넷을 통해 이용희망 주차장의 월정기권을 접수한 일자
15. 공고매수: 주차장별 상황을 고려하여 당월 인터넷으로 판매하기로 계획한 월정기권의 매수
16. 개인차량: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이 아닌 이용자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리스·렌트한 차량
17. 가족차량: 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표기되는 가족의 차량 또는 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
18. 사업자(법인, 개인)차량: 법인 명의로 등록(소유) 또는 법인 명의로 리스·렌트한 차량 및 개인 사업자 명의로 등록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리스·렌트한 차량
19. 잔여분: 신청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월정기권 인터넷 판매 후 남은 분량
20. 사용 개시일: 이용자에게 월정기권 서비스 공급이 시작되는 날로, 매월 1일 또는 잔여분 구매 시 결제일자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월 정기 주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공단은 운영 또는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약관은 본 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본 약관에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물음에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월 정기 주차 운영 주차장)

구분	주차장명	위치	급지	신청 개시일
선착순	가양라이품	강서구 가양동 1457-1	4	22일
	개화산역	강서구 방화동 845	4	19일
	개화역	강서구 개화동 664	4	20일
	구파발역	은평구 진관동 66-30	4	24일
	도봉산역	도봉구 도봉동 288-19	4	21일
	동대문	중구 신당동 251-7	1	22일
	마포유수지	마포구 마포동 36-1	2	22일
	복정역	송파구 장지동 561-9	4	19일
	사당노외	서초구 방배동 507-1	2	23일
	서린노외	종로구 서린동 63	1	22일
	세종로	종로구 세종로 80-1	1	24일
	수락산역	노원구 상계동 1268	4	23일
	수서역	강남구 수서동 735	2	21일
	신방화역	강서구 마곡동 739	4	25일
	신천유수지	송파구 신천동 14	3	24일
	영등포구청역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3	3	23일
	용산주차빌딩	용산구 한강로2가 12-9	2	25일
	웃우물	양천구 신정동 943-25	3	20일
	일원터널	강남구 일원본동 722-1	4	19일
	잠실역	송파구 잠실동 29	1	18일
	장안2동	동대문구 장안동 286-9	4	20일
	종묘	종로구 훈정동 2	1	19일
	천왕역	구로구 오류동 174-10	4	21일
	천호역	강동구 천호동 455	3	26일
	학여울역	강남구 대치동 514-1	3	24일
	한강진역	용산구 한남동 산 10-84	2	21일
	화랑대역	중랑구 묵동 28	5	25일
	훈련원공원	중구 을지로5가 40-3	1	23일
추첨제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구 구로동 1123	3	18~22일 접수
	신대방역	동작구 신대방동 643-1	3	

제6조(신청자격)

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일반시민 누구나(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인 타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와 타시도 소재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② 웃우물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카니발, 스타렉스, 렉스턴, 신형에쿠스, 체어맨, 베라크루즈, 코란도 밴 등 높이 185cm 또는 너비 192cm 또는 길이 505cm 또는 중량 2,200kg 이상의 중, 대형 차량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③ 각 주차장별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① 이용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당월 말일 24시까지이며,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단, 야간 월정기권 이용자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 19시부터 익월 1일 09시까지입니다.

※ 이용기간 중 중도구매 시 이용기간 : 구매일부터 말일까지

※ 야간정기권 이용시간 : 〔평일〕 19시부터 익일 09시

〔주말·공휴일〕 전일 19시부터 주말·공휴일 종료 익일 09시

② 전일 월정기권 또는 야간 월정기권 이용 차량은 이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외의 주차는 시간주차요금을 적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이용요금)

① 주차 구획 사용 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별표1〕에 규정된 해당 급지별 월정기권 요금으로 정하고, 해당 조례 제7조에 의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②「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별표1〕에 따라 주차요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에 따라 기간별로 약관의 〔별표2〕, 〔별표3〕과 같이 주차장별 월정기권 요금이 조정됩니다.

제9조(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① 감면대상자의 경우 신청 시 감면자격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셔야 하며, 별표 1에 따라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해주셔야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1. 사업자(법인, 개인) 차량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5.18민주유공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환승, 독립유공자)은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을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경차, 저공해자동차,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 및 결제수단에 따른 감면(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이용 결제자)은 적용 가능합니다.

②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③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미만 상세주소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바랍니다.

④ 증빙서류 허위등록 또는 미등록 시 해당 월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10조(이용신청)

① 공단에서 운영하는 월정기권은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 및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신청 및 구매하셔야 합니다. 월정기권은 차등 없이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는 선착순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경쟁이 치열한 주차장(신대방역, 구로디지털단지역)은 전산에 의한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시: 2월에 월정기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1월에 인터넷으로 신청

② 월정기권 신청은 제5조의 각 주차장별 정해진 신청 개시일 오전 09시부터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입니다. 신청 개시일은 공휴일과 관계없습니다.

1. 교통약자인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상자·독립유공자는 주차장별 신청 개시일의 하루 전일부터 우선 신청 가능합니다.

2. 추첨제 주차장의 월정기권 신청일은 매월 18일~22일이며, 추첨 결과는 매월 23일에 발표됩니다.

3. 정기권 잔여분은 전월 말일까지 선착순 판매 후 대기접수자가 없는 주차장에 한하여 판매하며, 매월 1일~15일동안 잔여분 소진시까지 판매합니다.

③ 차량번호 기준 주차장 1곳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핸드폰 번호(아이디)당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④ 해당 대기 순번은 신청하신 월의 말일까지만 유효합니다.

⑤ 취소자가 발생하여 대기 순번자에게 결제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문자로 연락하므로 연락처는 항상 최신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제11조(이용요금의 납부)

① 월정기권 이용 요금은 정기권 신청 후 익일 23시까지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ISP),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첨제 주차장의 경우 추첨결과에 따라 24일~25일 23시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자는 익일 23시까지 결제하셔야 하며, 결제일이 경과되면 신청이 취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일이 말일인 경우 또는 잔여분 구매 시에는 당일 23시까지 결제하셔야 합니다.

제3장 이용변경 및 취소

제12조(사정변경)

월 정기 주차 수요 및 시간제 주차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일부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 주차 차량을 배정하는 것이므로, 시간제 주차 수요, 주차장 현장상황 등으로 주차장 만차 발생 시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월정기권의 공고매수는 매월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13조(이용변경)

① 이용 개시 후 차량번호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차량의 차량번호 단순변경은 월1회에 한하여 본인 또는 가족(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빙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은 변경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과 가족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스차량 이용 시: 리스(렌탈) 이용확인서 추가 제출

2. 개인차량이 사고 또는 수리로 인해 차량번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렌트카 또는 가족(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빙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은 변경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사고증빙서류(보험사고증명원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수리증빙서류

(수리내역서)와 가족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의 차량번호 단순변경은 월정기권 이용 개시 전 월 1회, 개시 후 차량변경 이력이 없는 차량에 한하여 월 1회 가능합니다. 차량 변경 시 동일 사업자(법인, 개인) 명의 차량 또는 동일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4.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의 폐차, 매각, 렌트차량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차량번호를 변경할 경우 월 1회 변경 가능합니다. 사고 또는 수리로 인해 차량번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 명의의 렌트카로 변경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사고증빙서류(보험사고증명원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수리증빙서류(수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용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 기간 중 임시 차량 사용 필요시 공단에 연락을 하여 사전에 변경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 조치를 받으신 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제14조(이용요금의 반환)
① 이용 개시 전 환불신청 시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② 이용 개시 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월정기권 사용 개시일(매월 1일 또는 잔여분 구매시 결제일)로부터 7일까지만 환불 가능합니다. 개시 후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서 접수 후 이용 포기일부터 일할계산 되어 환불됩니다.

제15조(직권취소)
① 월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무작위 현장점검 실시)이 밝혀질 경우 월정기권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월정기권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2.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3.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방치하여 이용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5. 기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6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차량에 흠집 또는 기타 문제 발생을 공단에 배상·처리를 요구하실 때에는 이용자(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단은 사고 정황을 확인합니다.
② 공단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공단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정황을 확인하여 배상처리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매월 1일~말일) 동안 자유롭게 주차 구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월 정기 주차 구획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제 이용 차량 현황에 따라 주차장 만차 시 대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월정기권 신청 시, 대기 순번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① 월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주차 시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여성우선주차구획, 전기자동차우선주차구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차내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차량으로부터 이탈 시 반드시 차문을 잠궈야 합니다. 차량내의 귀중품은 분실, 도난 시 주차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제19조(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릅니다.

::::::::: 부 칙 :::::::::

1. 본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 조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이용을 신청합니다.

〔별표 1〕

감면자격별 제출(증빙)서류 및 감면요건 (제9조 관련)

감면자격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감면요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 국가유공상이자증 또는 ▸ 고엽제환자 등록확인증 또는 ▸ 의상자증 또는 ▸ 독립유공자증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및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공통)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승용차요일제	▸승용차요일제 표지부착 확대 사진 ▸전면사진(번호판 확인 가능본)		승용차요일제 참여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할인혜택은 전자태그 차량 부착 인증샷 승인 후 부터 적용)
환승	▸재직(학)증명서, 학원수강내역서, 의료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목적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명함(재직증명서상 주소 미기재시 제출)		목적지와 출발지가 모두 주차장 각 입·출구 기준 반경 1km 이상만 인정 *환승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
경차	-		-
저공해자동차	① 저공해차량 발급 도장날인 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② 환경부 발행 저공해자동차증명서 (차대번호 기재본) 또는 ③ 자동차등록원부(저공해 신청 원부 기재) 또는 ④ 환경부 발행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사진 및 확대사진	〔필수〕 자동차등록증 1부 ※ 가족차량(감면자격과 차량명의가 상이)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경차 환승/ 저공해 환승	▸경차+환승(각 해당 증빙서류) ▸저공해+환승(각 해당 증빙서류)		목적지와 출발지가 모두 주차장 각 입·출구 기준 반경 1km 이상만 인정 *환승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장 발행 다둥이행복카드 (신청인과 카드명의자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막내나이 만13세,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만 적용)
5.18민주유공 부상자	▸5.18민주유공상이자증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증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중대형 차량 (화물·승합)	-		중대형 차량은 각종 감면혜택 미적용

〔별표 2〕

〈4월~11월 월정기권 이용요금〉

(단위 : 원)

주차장명	급지	이용요금				
		일반	환승이용 차량	장애인	저공해차 또는 경차	환승이용 저공해차 또는 환승이용 경차
가양라이품	4	65,000	-	13,000	32,500	-
개화산역	4	65,000	40,000	13,000	32,500	13,000
개화역	4	65,000	40,000	13,000	32,500	13,000
구파발역	4	65,000	40,000	13,000	32,500	13,000
도봉산역	4	65,000	40,000	13,000	32,500	13,000
동대문	1	180,000	-	36,000	90,000	-
마포유수지	2	130,000	65,000	26,000	65,000	-
복정역	4	65,000	40,000	13,000	32,500	13,000
사당노외	2	130,000	65,000	26,000	65,000	-
서린노외	1	200,000	-	40,000	100,000	-
세종로	1	180,000	-	36,000	90,000	-
수락산역	4	65,000	40,000	13,000	32,500	13,000
수서역	2	120,000	65,000	24,000	60,000	-
신방화역	4	65,000	40,000	13,000	32,500	13,000
신천유수지	3	100,000	52,000	20,000	50,000	-
영등포구청역	3	80,000	40,000	16,000	40,000	-
용산주차빌딩	2	120,000	60,000	24,000	60,000	-
웃우물	3	100,000	52,000	20,000	50,000	-
일원터널	4	50,000	-	10,000	25,000	
잠실역	1	180,000	125,000	36,000	90,000	-
장안2동	4	50,000	-	10,000	25,000	-
종묘	1	180,000	-	36,000	90,000	-
천왕역	4	65,000	40,000	13,000	32,500	13,000
천호역	3	100,000	52,000	20,000	50,000	-
학여울역	3	100,000	52,000	20,000	50,000	-
한강진역	2	120,000	60,000	24,000	60,000	-
화랑대역	5	39,000	30,000	7,800	19,500	7,800
훈련원공원	1	180,000	-	36,000	90,000	-
구로디지털단지역	3	100,000	52,000	20,000	50,000	-
신대방역	3	100,000	52,000	20,000	50,000	-

〔별표3〕

〈미세먼지 시즌제(12월~3월) 월정기권 이용요금〉

(단위 : 원)

주차장명	급지	미세먼지 시즌제(12월~3월) 이용요금			
		배출가스 5등급 외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반	환승	일반	환승
가양라이품	4	65,000	-	75,000	-
개화산역	4	65,000	40,000	75,000	60,000
개화역	4	65,000	40,000	75,000	60,000
구파발역	4	65,000	40,000	75,000	60,000
도봉산역	4	65,000	40,000	75,000	60,000
동대문	1	180,000	-	270,000	-
마포유수지	2	130,000	65,000	195,000	97,500
복정역	4	65,000	40,000	75,000	60,000
사당노외	2	130,000	65,000	195,000	97,500
서린노외	1	250,000	-	300,000	-
세종로	1	225,000	-	270,000	-
수락산역	4	65,000	40,000	75,000	60,000
수서역	2	120,000	65,000	180,000	97,500
신방화역	4	65,000	40,000	75,000	60,000
신천유수지	3	100,000	52,000	150,000	78,000
영등포구청역	3	80,000	40,000	120,000	60,000
용산주차빌딩	2	120,000	60,000	180,000	90,000
웃우물	3	100,000	52,000	150,000	78,000
일원터널	4	50,000	-	75,000	-
잠실역	1	180,000	125,000	270,000	187,500
장안2동	4	50,000	-	75,000	-
종묘	1	225,000	-	270,000	-
천왕역	4	65,000	40,000	75,000	60,000
천호역	3	100,000	52,000	150,000	78,000
학여울역	3	100,000	52,000	150,000	78,000
한강진역	2	120,000	60,000	180,000	90,000
화랑대역	5	39,000	30,000	45,000	40,000
훈련원공원	1	225,000	-	270,000	-
구로디지털단지역	3	100,000	52,000	150,000	78,000
신대방역	3	100,000	52,000	150,000	78,000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보철용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저공해 조치 및 신청차량('19.10월까지)은 5등급차량 50%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5등급 외 차량의 이용요금이 적용됩니다.

※조례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요금에서 감면비율만큼 할인됩니다.